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전자소송시스템에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의 제출 비중을 늘려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게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p> <p>① ~ ③ (생 략)</p> <p><u><신 설></u></p>	<p>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u> <u>서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u> <u>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u> <u>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u></p>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711